

2024 「신진작가 홍보·마케팅 지원」 사업 2차 공모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신진작가의 종합 마케팅 및 관련 분야 네트워킹을 통한 시장진입 기회 제공 및 전업작가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「신진작가 홍보·마케팅 지원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□ 공모개요

구분	내 용																
공모명	2024 신진작가 홍보·마케팅 지원 참여단체 2차 공모																
신청기간	2024. 4. 9.(화) ~ 5. 3.(금) 15:00까지																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의 홍보·마케팅을 기획,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지원대상 신진작가 : 상업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, 상업화랑에서 개인전 개최 경험이 없는 2024년 기준, 만39세(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이하의 신진작가 * 영리 목적의 미술전시 기획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갤러리, 전시기획사, 전시공간 포함 등에 해당되며,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(고유번호증 불가) * 신진작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작가에 한함 																
신청자격 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•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 •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,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•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 •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」 제7조 제4항 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2.05.16.개정) •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•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• 동 사업으로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의 홍보·마케팅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전시개최 경비 지원(아트페어 참가 포함) ※ 지원대상 작가 1인의 참여 비중(작품 수 기준)이 50% 이상인 전시회 한함(아트페어 참가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) - 작가별 포트폴리오, 홍보영상, 아트상품, 비평 및 에디토리얼 등 작가 홍보 제작비 지원 - 작가, 작품 소개 등을 위한 토크프로그램 및 미술시장 관계자와 네트워킹 개최 운영비 지원 ※ 지원작가에 한하여 홍보 프로모션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기획 필수 - 전체 예산의 10% 이내에서 내부 기획자 사례비 책정 가능 																
지원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체 3개 내외 지원 예정(작가 7인 기준), 작가 1인당 1,500만원 정액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체당 작가 3인까지 신청 가능 - 지원단체가 작가 1인의 홍보·마케팅을 기획하여 지원 신청할 경우 지원금 1,500만원, 작가가 2인일 경우 3,000만원, 3인일 경우 4,500만원 																
지원 세부항목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지원내용 예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전문가 활용비</td> <td>기획자 인건비</td> </tr> <tr> <td>홍보 마케팅비</td> <td>인쇄물, 홍보물, 광고비 등</td> </tr> <tr> <td>운송비</td> <td>우편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운송료</td> </tr> <tr> <td>공공요금 및 제세</td> <td>작품보험료</td> </tr> <tr> <td>임차료</td> <td>대관료, 행사물품 및 장비 대여비 등</td> </tr> <tr> <td>대행용역비</td> <td>행사·홍보 대행용역비, 촬영 및 영상 제작 용역비, 기타일반용역비</td> </tr> <tr> <td>여비 교통비</td> <td>해외인사 숙박비 및 운임(항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지원내용 예시	전문가 활용비	기획자 인건비	홍보 마케팅비	인쇄물, 홍보물, 광고비 등	운송비	우편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운송료	공공요금 및 제세	작품보험료	임차료	대관료, 행사물품 및 장비 대여비 등	대행용역비	행사·홍보 대행용역비, 촬영 및 영상 제작 용역비, 기타일반용역비	여비 교통비	해외인사 숙박비 및 운임(항공)
	구분	지원내용 예시															
	전문가 활용비	기획자 인건비															
	홍보 마케팅비	인쇄물, 홍보물, 광고비 등															
	운송비	우편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운송료															
	공공요금 및 제세	작품보험료															
	임차료	대관료, 행사물품 및 장비 대여비 등															
	대행용역비	행사·홍보 대행용역비, 촬영 및 영상 제작 용역비, 기타일반용역비															
여비 교통비	해외인사 숙박비 및 운임(항공)																
지원기간	2024. 6. 1. ~ 11. 30.																

□ 지원 신청 방법
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
- 신청기간 : 4. 9.(화) ~ 5. 3.(금) 15:00
 - ※ 접수기간 내 'e나라도움'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, 신청기간 이후에는 입력 불가함
 - ※ 제출서류 누락 시 심의에서 제외되며 모든 책임은 지원자(단체)에 있음
- 제출서류 및 방법 : 전자파일 형태로 'e나라도움'을 통해 제출
 - ※ 아래 표 참고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 불가함

단계	구분	제출서류
서류 심의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작성	• e나라도움 시스템 내의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작성
	e나라도움 파일 첨부	•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식의 지원신청서(한글파일) *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(www.gokams.or.kr) →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(JPG 또는 PDF 파일) 1부(*고유번호증 불가) • 최근 5년간 전시 및 작품판매 이력(jpg 또는 pdf 파일) 1부
PT 심의	PT 자료	• 서류심의 이후 PT심의 대상 단체에 한하여 이메일을 통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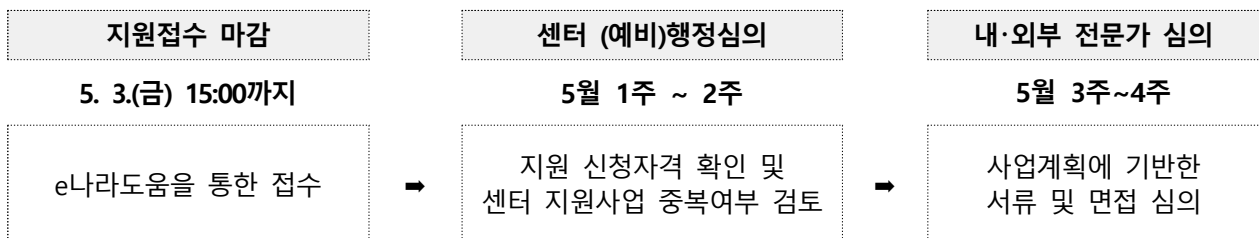
※ 'e나라도움' 내 공모신청 경로

사업수행관리>신청관리>공모현황>공모명 : 「2024 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」 참여단체 2차 공모 검색>신청서 작성

- ※ e나라도움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, 공인인증서 필요
- ※ e나라도움 가입 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, 개인회원 가입 불가
- ※ 본 지원 사업은 '예치형' 사업으로 e나라도움 등록 필수
- ※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
- ※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: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-9595

□ 심의개요

- 심의방법 :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심의
- 심의절차



*상기 심의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

- 선정결과 :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

□ 주요사항

<p>지원 불가 항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: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•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: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, 홈페이지 구축비 등 • 부대비용 :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 •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: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 등 • 기타 사항: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,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
<p>지원 자격 제외 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•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 •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,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•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 •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」 제7조 제4항 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2.05.16.개정) •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•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• 동 사업으로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<p>선정 단체 의무 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나라도움 교육 보조사업자 집행과정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• 사업운영시 작가 1인당 네트워킹 프로그램 1회 개최 필수 • 「2024 미술시장조사」 응답 필수 •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 · 성과공유회 참석 필수 •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. 불이행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6조의2 제1항의 '불공정행위'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<p>* '문화예술용역'이란?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(사업운영인력 전원) •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<p>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*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나라도움 상 집행·정산·실적보고·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• 모든 홍보/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 • 참여작가는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제출 필수

□ 유의사항

-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
- 선정 단체 대표 및 임직원과 홍보·마케팅을 지원하는 작가가 친인척(8촌 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)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
- 대표 본인 및 임직원에게 기획 사례비 이외의 평론 및 번역/감수 사례비 지급 불가, 선정단체가 운영하는 전시장에서 전시를 진행할 경우 임차료 지급 불가
- 지원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 2에 따른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며,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 - 지원사업 추진 도중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야 함
-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- *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사업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 부분에 한해 단체에서 직접 부담
-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국고보조금 지침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

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바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사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- 아.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
○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
*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
* 예 :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

○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

*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

*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 내에서만 가능

* 교부 신청은 사업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

○ 임직원 연관(직계존비속 포함)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

*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('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'관련)

*제13조(보조금 사용 및 제한)

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)와는 거래할 수 없다. 다만,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.

○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

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
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

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
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

○ 공모요강,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, 사업운영 가이드,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

○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제출 후 수정 불가)

□ 관련문의

○ 사업 관련 문의 :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

- (유선) 02-708-2219

- (이메일) hyme9@gokams.or.kr

※ 문의 가능 시간 : 평일 월-금, 10:00~17:00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○ e나라도움 이용문의 : e나라도움 고객센터

- (유선) 1670-9595